

개인 연금제

올해 5월부터 개인 연금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이 연금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는 소득 공제가 된다. 이는 노령 인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 나고 있어 정년 이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연금 제도는 은행이 취급하는 개인 연금 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 연금 보험 두 가지가 있다. 가입 조건이나 세계 혜택은 같으나 은행과 보험회사의 특성상 연금의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되며, 5년이 지난 후 해약하면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나 이자 소득세는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이자 소득세는 내야 한다.

●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 연금 신탁과 보험 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 연금 보험, 기존의 국민 연금과 차이점

국민 연금은 국민 연금법에 의한 공적 연금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는 본인인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는 월급의 2%를, 사업주와 퇴직금 전환금에서 2%씩



각각 부담금을 내고 있다.

개인 연금은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적 연금으로서 개인 연금 신탁은 저축 기능을 갖고 있고, 개인 연금 보험은 저축과 위험 보장을 겸하고 있다. 개인 연금 신탁은 돈을 만기까지 붓고 연금받는 기간을 정해 나눠 받는다. 개인 연금 보험은 연금을 붓는 도중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주며, 연금도 일정 기간을 정해 받거나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 중 택일할 수가 있다.

● 국민 연금과 개인 연금종 어

느 것이 유리한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 연금이 유리하며, 개인 연금도 세계 혜택이 많아 노후 보장책으로서 좋은 제도이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어 함께 가입하여 두면 노후 생활이 훨씬 윤택해 질 수 있다.

● 납입 금액

개인 연금 신탁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정액식)과 매달 내고 싶은 만큼 납입하는 방법(자유 적립식)이 가능하다. 개인 연금 보험과 같이 체증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매달 1만원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표 1〉국민·개인 연금 제도 비교

구분	국민 연금	개인 연금 (은행신탁기준)
도입 시기	88년 1월	94년 5월
성격	공적	사적
가입 대상	만 18~ 60세	만 20세 이상
가입 자격	5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기타는 희망시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본인 희망시)
불입 기간	15~20년 이상 원칙	10년 이상 원칙
불입 금액	월급의 2% 의무납입 (사용자, 퇴직전환금서도 각 2 %씩)	월 1만원 이상 자유적립
연금 지급 자격	60세 이상 원칙	55세 이상 원칙
지급 기간	사망시까지 (사망후에는 유족 연금으로 지급)	5년 이상 분할 지급 (미리 기간을 계약해야 함)
지급 주기	분기별	매달 지급이 원칙이나 3, 6, 12 개월도 가능
지급 수준	중간소득계층이 20년 가입시 마 지막 받은 월급의 40%수준	1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내면 10년 동안 매달 26~27만원정도 받음
세제 혜택	• 연금에 대한 소득·주민세 면제 • 기업부담금은 손비 처리	• 불입액의 40%소득 공제 • 이자소득세 비과세

〈표 2〉은행 개인 연금 예상 지급액

(단위: 원)

적립기간	적립원금 총액	적립종료시 원리금 합계	연금지급액		
			5년간지급	10년간 지급	
10년	월10만원	12,000,000	20,418,227	431,715	267,496
	12만원	14,400,000	24,501,872	510,058	320,995
	15만원	18,000,000	30,627,341	647,572	401,244
15년	월10만원	18,000,000	41,025,988	867,437	537,475
	12만원	21,600,000	49,231,186	1,040,925	644,969
	15만원	27,000,000	61,538,982	1,301,156	806,212

〈표 3〉생명보험사 개인연금보험 예상지급액

(단위: 원)

월 보험료 (가입시)	40~54세(보험료불입기간)		월연금지급액 (55세~종신)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장해보험금	55세월 연금액	65세이후 월연금액
50,000	9,360,000	6,550,000(2급) ~940,000(6급)	211,000	315,000
100,000	18,730,000	13,110,000(2급) ~1,870,000(6급)	423,000	631,000
150,000	28,090,000	19,660,000(2급) ~2,810,000(6급)	634,000	946,000

※ 40세 남자가 15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납입 한다면 55세부터는 634,000원, 65세 이후는 946,000원을 받는다.(수익률은 9.5%이며, 보험료의 불입은 해마다 5%씩 올리는 경우임.)

● 수익자의 연령

만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수익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30세인 사람이 15년 짜리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은 만기인 15년 이후가 아닌 55세가 되는 25년후부터 받게 되며, 가입자와 수익자는 같아야 한다.

● 현재 40세인 남자가 15년짜리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첫째 해에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보험료를 5%씩 높이는 체증식으로 붓는다면 55세 이후의 연금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될까.

예정 이율 즉, 수익률을 연 9.5%로 보고 종신 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55세 때는 월 42만 3천원을 시작으로 액수가 늘어 65세 부터는 월 63만 1천원이 되며, 이후 사망시까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만큼 올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개인 연금 보험을 붓다가 중간에 불구가 되어 돈을 불입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기존의 연금 보험에서는 이때 남은 기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고, 3급 이상의 장애는 매년 정해진 연금을 주며, 4급 이하의 장애는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주고 있다. 개인 연금 보험도 이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 기존의 연금 보험 가입자의 세제 계획

기존의 연금 보험 가입자는 개인 연금 전환 특약을 맺어 개인연금으로 전환해야 세제 혜택이 있으며, 이때 개인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은 10년 이상의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